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594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594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09076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 피항소인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남지혜, 유병일

2. D

변론 종결2024. 11. 13.

판결 선고2024. 12. 1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0907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B(C생, 이하 생년은 생략), 피고 D(E생, 이하 생년은 생략)은 각 9,962,223원 및 그 중 9,662,221원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F, G는 각 4,981,111원 및 그 중 4,981,110원에 대하여 각 2022. 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분의 최종 송달일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H과 피고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는 제1심 공동피고 B, 피고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F, G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다. H과 피고 D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11. 2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13,333,333원의, 피고 F, G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각 6,666,666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K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1. 청구취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D(C생), F, G를 각 제1심 공동피고 B, F, G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H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아래의 채권양도는 H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H이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아래의 채권양도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이를 일괄해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H의 적극재산에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채권양도 당시 H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H과 피고 A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는 H의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H과 피고 D 사이에서 2021. 11. 25. 있었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를 취소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은 H의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전채권액보다 큰 금액의 이 사건 채권은 물론 예금채권과 보험금, 공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시 H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A는 H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에 불과하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 무자력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H의 상속인들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어 무자력 요건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을 당시 서병렬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H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신용보증사고(이 사건 음식점 폐업)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사전 또는 사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사후구상금 채권까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R중앙회, S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는 2021. 11. 25. 18시경 H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 채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들었다.

나) H이 2021. 11. 25.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H이 육종암 진단으로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포함한 것이다.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16:02:412) 2021. 11. 25. 16:26:07경 A로부터 20,000,000원이 입금되기 전 마지막 금융거래내역이 있었던 시점이다.	2,859,556
R중앙회	(계좌번호 2 생략)	19:19:45	4,567,305
R중앙회	(계좌번호 3 생략)	20:19:50	31,394,350
합계			38,821,211

다) H은 2020. 7. 29. T중앙회의 U공제회('V')에 가입하였고, 2021. 12. 9.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후 T중앙회로부터 공제부금 17,421,868원을 지급받았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질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H이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채권양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본다.

나) 먼저 사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피고 A에 대한 2021. 11. 26.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2021. 11. 25.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사해행위 시점을 2021. 11. 25.라고 볼 것이고, ②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인인 H과 양수인 피고 D 사이 채권양도의 합의가 있었던 시점이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라 할 것인데, 채무자 K가 H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들었던

2021. 11. 25. 18시 이전에는 H과 피고 D 사이 채권양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2021. 11. 25.에는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거래의 상대방과 거래의 성격이나 종류, 거래 목적물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처분의 기회가 같다고 할 수 없고, 양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외에는 두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불과해 각 행위마다 사해성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더라도, 그 행위를 전후하여 채무자인 H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앞서 본 사실 및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기 전 H은

38,821,211원의 예금채권과 가액 240,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 40,000,000원의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여 그 적극재산이 총 318,821,211원이었고3),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9,886,670원 및 피고 A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0,000원, 합계 229,886,670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는 후에도 H은 여전히

38,821,211원의 예금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9,886,670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며4), 그 외 H에게 다른 소극재산이 있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는 후에도 H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H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H의 예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A가 2021. 11. 25. H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예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채권자들은 그 예금채권으로부터 만족을 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후 출금이 자유로워 은닉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선의종

판사정덕수

판사윤재남

별지

-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D에 대해 H과 피고 D 사이 채권양도 중 일부의 취소와 그 가액배상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철회하고, 청구취지를 일부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취지도 일부 변경되었다.
- 2) 2021. 11. 25. 16:26:07경 A로부터 20,000,000원이 입금되기 전 마지막 금융거래내역이 있었던 시점이다.
- 3) 피고들은 V 공제부금 17,421,868원 및 피고 A가 2021. 11. 25. H에게 지급한 20,000,000원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점에는 H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지 않아 공제부금의 발생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A가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바, 적극재산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4)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H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